

비상경제본부 회의 겸
경제관계장관회의 겸
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
26-26-2 (공개)

“막힌 투자는 뚫고, 현장의 애로는 풀니다” 현장중심 기업투자 · 혁신 지원방안(1차)

2026. 8. 13.

관 계 부 처 합 동

“막힌 투자는 뚫고, 현장의 애로는 풀니다” 현장중심 기업투자·혁신 지원방안 [요약]

1 추진배경

- 지금 우리경제는 향후 성장경로를 결정할 구조적 전환점에 직면
 - 저출생·고령화 등에 따른 성장 기반 약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,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
 -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·혁신이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회복 시급
-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기업의 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대도약과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
 - 최근 반도체 중심의 견조한 투자 회복 흐름을 가속화하고,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혁신과 신산업 육성 추진
 - * 설비투자 증감률(전기비, %) : ('25.1Q)0.2 (2Q)△1.8 (3Q)1.3 (4Q)△1.6 ('26.1Q)6.6 (2Q)0.2
 - 특히, 당장 기업수요가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규제합리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현장의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

2 투자·혁신 지원방안

1.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

① (이차전지) 이차전지 연관업종 구미·포항 국가산단 입주 허용

- ▶ (사업내용) 구미·포항 국가산업단지 내 재자원화 업종 입주 확대
- ▶ (투자기간) '26~'27년 ▶ (투자규모) 약 1,000억원

- (현황)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구미·포항 국가산단에는 이차전지 연관 업종으로 제조업만 입주 가능
 - 이차전지 자원재생(리사이클링)은 배터리 핵심 제조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연관 업종으로 분류되어 산단 내 입주 불가
- (지원방안) 산단 입주 대상 업종에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('26.1월) 상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관련업종* 추가
 - * 재자원화 리튬, 니켈, 코발트, 망간, 흑연 중간(최종)소재 제조업
 - 산업단지계획(국토부) 및 관리기본계획(산업부) 개정('26.下~)

② (반도체) 대규모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시 신규 건축허가

- ▶ (사업내용)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
- ▶ (투자기간) '26~'27년
- ▶ (투자규모) 약 2.5조원

- (현황) 건축법상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공장건설 과정에서 신규 건축물 증설 추진 시, 매번 기존 건축허가 변경 필요
 - 건축허가 변경 절차가 완료되기 前 추가 증설이 발생할 경우, 건축허가 변경을 다시 신청해야 해 증설 및 설비가동 지연
- (지원방안) 일정면적 이상 산단의 경우 증설 건축물에 대해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하여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「건축법」 개정 추진(26.下)

③ (반도체) 소부장 실증 지원법인 출연금 등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

- ▶ (사업내용) 반도체 5대 공정 실증설비(트리니티 팹) 구축
- ▶ (투자기간) '25~'31년
- ▶ (투자규모) 약 8,000억원

- (현황) 반도체 분야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, 반도체 기업 출연금을 바탕으로 실증 지원법인(예: 트리니티 팹) 운영 중
 -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, 실증 지원법인이 출연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
- (지원방안) 상생협력 취지 등 감안,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(27~31)

④ (바이오) 오창과학산단 내 바이오 제조시설 증설 위한 녹지 용도변경

- ▶ (사업내용) 국내 바이오기업 제조시설(공장) 증설
- ▶ (투자기간) '26~'33년
- ▶ (투자규모) 약 5,300억원

- (현황) G社は 오창과학산단 내 바이오 제조시설 증설 검토 중
 -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적으로 연결된 공장 증설이 필요하나, 산단 내 기존 유희부지 부족 등으로 증설 곤란
 - 연접한 청주시 소유 녹지 용도 변경(녹지→산업용지) 및 구매 필요
- (지원방안) 기존 공장과의 연계 필요성, 산단 내 녹지 현황*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단계획 신속 변경(녹지→산업용지) 추진(26.下)

* 오창과학산단 녹지율은 18% 수준으로 용도변경 후에도 녹지율 기준(10~13%) 충족

5 (식품)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부지 활성화

- ▶ (사업내용) 음료제조업 부지를 식·음료제조업 부지로 변경(확장)하여 투자유치활성화 기여
- ▶ (사업기간) '26~'30년 ▶ (기업 투자규모) 약 3,500억원

- (현황) 국가식품클러스터(전북 익산) 내 음료제조업 부지의 분양률은 저조한 반면 식음료제조업 부지는 분양률 양호

* (분양률, '25.12월) (전체) 75.9%, (식음료제조업) 90.3%, (음료제조업) 22.2%

- (추진방안) 관리기본계획을 조속히 변경하여 음료제조업 부지를 식음료제조업으로 입주 대상 업종 확대 추진('26.下)

2.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

□ 협동로봇·신유형 로봇 확산을 위한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 구체화

- (현황) 근로자와 같이 작업하는 협동로봇은 울타리가 없는(펜스리스) 작업이 불가피하나, 펜스리스 작업 허용 기준이 불명확해 도입에 애로
 -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로봇은 고정형 매니퓰레이터 중심으로 정의되어, 이동형 로봇 등 신유형과 차이
- (지원방안) 협동로봇 및 이동형 등 신유형 로봇이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 구체화

- ① 협동로봇 등 신유형 로봇이 KS·ISO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 마련*('27.上)

* 「산업용 로봇 안전기준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」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중('26.6월~)

- ② 다양한 유형의 로봇을 포괄하기 위해 산업용 로봇 정의를 정비*하고 이에 따른 실효적인 안전기준 방안 마련(~'27년)

* 제조·물류서비스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협동로봇, 이동형 로봇 등 다양한 유형의 로봇을 포괄해 산업용 로봇 정의 정비

□ 첨단전략산업 화재안전 성능기반설계 도입 및 직통계단 설치기준 정비

- **(현황)**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공장이 규모화되고 자동화됨에 따라 일반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기 불합리한 측면
 - 화재안전을 위한 직통계단 설치의 경우, 완화기준*을 적용하는 무인화 공장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기업의 혼란·애로 발생
- * (자동화 공장) 피난거리 75m / (무인화 공장) 피난거리 100m(건축법 시행령)
- **(지원방안)** 6개 첨단전략산업* 대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합리적 대안설계 도출이 가능한 성능기반설계 도입
(「건축법」 및 하위 법령 개정 추진, ~'27년)
- * ①반도체, ②이차전지, ③디스플레이, ④바이오, ⑤로봇, ⑥방산
- 시뮬레이션을 통해 “피난 소요시간 < 화재 확산시간” 검증해, 화재시 재실자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유연한 설계 및 규제 적용
- ※ '무인화 공장'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념 정의 및 인정기준 검토도 병행

□ 첨단 산업 특성을 고려한 도시가스 안전 규제 합리화

- **(현황)** 월간 도시가스 사용량 500m³ 이상 증가시 안전검사(완성검사) 의무(반도체 유해가스 저감장치* 2대 증설시마다 검사 필요)
- * 도시가스를 연료로 활용하여 공정 중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분해하는 저감장치
- 반도체 FAB 특성상 연간 약 1,800여건의 증설이 수시 발생하나, 완성검사 승인 대기로 첨단 설비 가동 지연
- **(지원방안)** 반도체 FAB 등 첨단설비 가동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성검사 기간 단축(기존7일 → 개선3일)
- 안전장치·시공능력 갖춘 경우 일부 검사항목* 면제(KGS Code 개정^{'26.10월})
- * 시공자의 자체시험성적서 제출로 완성검사 항목 중 내압·기밀시험 대체 인정

□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유연화

- **(현황)** 유치업종 지정 중심의 산업단지 업종계획에 따라 산업 시설 용지의 분양률 저조 및 기업 투자 유치에 애로 발생
 - 다수의 산업단지가 초기 업종계획을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하여, 입주기업의 업종 변경 및 신산업 기업의 입주 수요 미반영
- **(지원방안)**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되는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·한도 확대* 및 업종특례지구 요건 완화**('26.下)

* 예) (現) 산업용지 면적의 30% → (改) 신산업RE100 등에 필요한 경우, 50%까지 상향

** 예) (現) 토지소유자 2/3 동의 필요 → (改) 과반수 동의로 완화

□ 중요도 높은 국가산단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 지정

- **(현황)** 현행 국토계획법 체계는 쏠 국토에 용도지역을 지정, 용도지역별로 조례에 따라 용도·밀도(용적률·건폐율)를 규정 중
 - 일부 국가산단은 용적률·건폐율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, 기업의 창의성·자율성 반영 및 혁신적인 공간 창출에는 미흡
- **(지원방안)** 기업형첨단도시 등 국가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단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「산업입지법」 개정 추진('26.下)
 - 용도제한이 없고 이론상 법상 용적률 상한(1,500%)도 초과할 수 있어 개발수요가 높은 부지의 고밀·복합개발에 활용 가능

□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 확대

- **(현황)** 「기회발전특구 지정·운영 지침」에 따라 광역시는 150만평, 도(道)는 20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
 - 일부 시·도의 경우 신규투자 수요로 넓은 부지가 필요*하나, 최대치인 200만평을 모두 지정하여 추가 특구지정이 불가

* 함정MRO, 조선수리업, 해상풍력, 데이터센터, 대규모 물류단지 등

- **(지원방안)** 신규투자 수요 등을 반영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특구 지정 상한면적 확대(「기회발전특구 지정·운영지침」 개정, '27.上)

* 예) 광역시 200만평, 도 300만평

순 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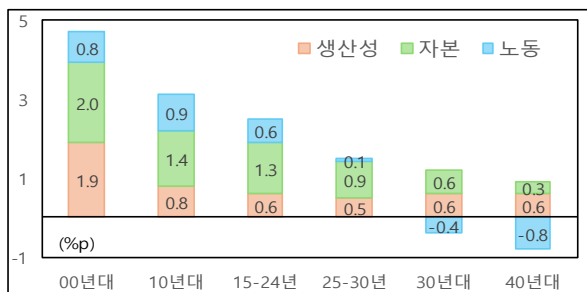
I. 추진배경	1
II. 추진방향	2
III. 추진방안	3
1.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가동 지원	3
① 이차전지 연관업종 구미·포항 국가산단 입주 허용	3
② 대규모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시 별도 신규허가 허용	4
③ 소부장 실증 지원법인 출연금 등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	4
④ 오창과학산단 내 바이오 제조시설 증설 위한 용도변경	5
⑤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부지 활성화	6
2. 투자친화적 제도기반 구축	7
① 첨단산업 규제 합리화	7
② 입지규제 유연화	10
IV. 향후 계획	12

I. 추진배경

□ 지금 우리 경제는 향후 **성장경로**를 결정할 **구조적 전환점**에 직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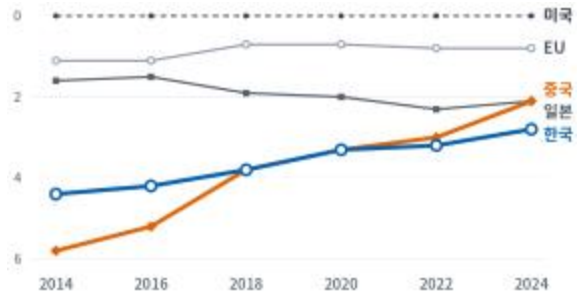
-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노동의 성장 기여도가 축소되는 가운데, 자본의 성장 기여도도 추세적으로 하락
 -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의 혁신역량도 전반적으로 저하
- * 국내 신규 유니콘 기업 수(개) : ('20) 3 ('21) 8 ('22) 9 ('23) 4 ('24) 2
- 저출생·고령화 등에 따른 성장 기반 약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,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
-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·혁신이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회복 시급

요인별 잠재성장률 기여도



*출처 : KDI (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, '25년)

미국 대비 주요국 중점 과학기술 격차



*출처 : 과기정통부 ('24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)

□ **3대 메가프로젝트** 추진과 함께 **기업의 혁신과 투자 활성화**를 통해 **경제 대도약**과 **대체불가 대한민국** 구현

- 최근 반도체 중심의 견조한 투자 회복 흐름을 가속화하고,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혁신과 신산업 육성 추진
- * 설비투자 증감률(전기비, %) : ('25.1Q)0.2 (2Q)△1.8 (3Q)1.3 (4Q)△1.6 ('26.1Q)6.6 (2Q)0.2
- 특히, 당장 기업수요가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규제합리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현장의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

◆ 그동안 **경제 6단체**, 반도체·이차전지 등 **업종별 단체**, **주요기업, 지자체** 건의 및 **5극3특 현장방문*** 등을 통해 **투자애로** 조사

* 11개 협단체, 8개 지자체, 5개 관계부처를 통해 제도개선 건의사항 청취('26.3월) 5극3특 현장방문('26.6월),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('26.3월~), 개별기업 건의(수사) 등

- 관계부처·지방정부와 함께 기업 투자·혁신 지원방안 강구

Ⅱ. 추진방향

◆ 5극3특 현장방문·경제단체 건의 등을 통해 ①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신속 가동을 지원하고, ②투자친화적 제도기반 구축도 병행

① 당장 투자수요가 있으나,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법령 개정, 패스트트랙 도입, 맞춤형 애로해소 등을 통해 신속 가동 지원

② 첨단·신산업 등 유망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새로운 경제·산업 환경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, 인센티브 보완 등 투자친화적 제도기반 구축

① 기업수요가 확인된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·조기 이행 지원

① 투자 프로젝트 이행 과정에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불필요한 투자지연을 초래하는 규제·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

② 각종 평가·인허가 절차, 관계기관 협의 등 투자 관련 절차는 신속 절차(패스트트랙) 도입 등을 통해 대폭 단축·간소화

② 기업 혁신·투자 친화적 제도기반 마련·강화도 병행 지원

① 반도체·AI·녹색전환 등 첨단·신산업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경제·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제도·규제 개선 추진

② 기준이 불분명하거나, 과도한 조건 부과로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기준·특례 등은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화하거나 완화·정비

③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 유망 분야 기업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

◆ 반도체·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이행, 규제 합리화, 입지규제 유연화 등을 중심으로 1차 대책 마련

○ 초혁신경제 프로젝트,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2차 투자대책을 마련·발표(3분기) 하는 등 기업 혁신과 투자를 적극 뒷받침

Ⅲ. 추진방안

1.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

① (이차전지) 이차전지 연관업종 구미·포항 국가산단 입주 허용

- ▶ (사업내용) 구미·포항 국가산업단지 내 재자원화 업종 입주 확대
- ▶ (투자기간) '26~'27년
- ▶ (투자규모) 약 1,000억원

○ (현황)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구미·포항 국가산단에는 이차전지 연관 업종으로 제조업만 입주 가능

- 이차전지 자원재생(리사이클링)은 배터리 핵심 제조 방식*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연관 업종**으로 분류되어 산단 내 입주 불가

* 핵심광물 수요 증가 전망('23→'40년 리튬 9배, 흑연 4배, 희토류 2배 등, IEA)에 따라 폐배터리를 활용한 국내 핵심광물 수급 기반 마련 및 재자원화 필요성 대두

**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E38(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)

<폐배터리 리사이클링(재자원화) 주 공정>



○ (지원방안) 산단 입주 대상 업종에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('26.1월) 상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관련업종* 추가

* 재자원화 리튬, 니켈, 코발트, 망간, 흑연 중간(최종)소재 제조업

- 산업단지계획(국토부) 및 관리기본계획(산업부) 개정('26.下~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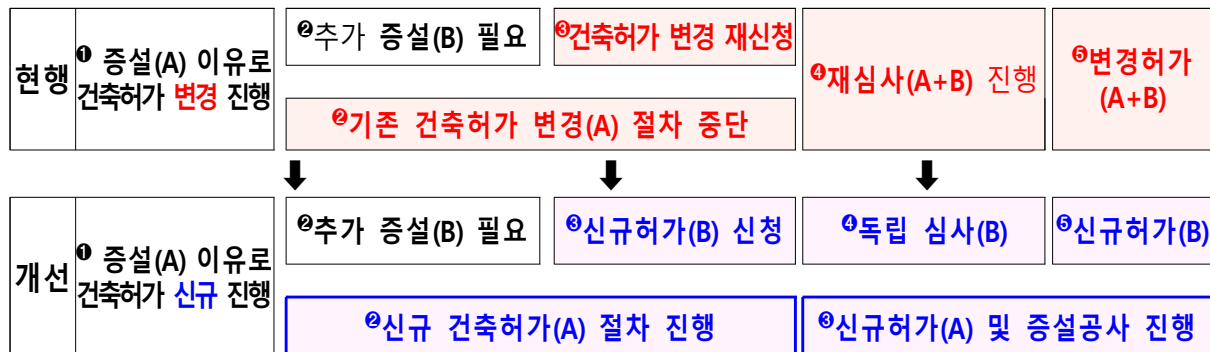
2 (반도체) 대규모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시 별도 신규허가 허용

- ▶ (사업내용)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
- ▶ (투자기간) '26~'27년
- ▶ (투자규모) 약 2.5조원

- (현황) 건축법상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공장건설 과정에서 신규 건축물 증설 추진 시, 매번 기존 건축허가 변경 필요
 -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은 신규 건축물 증설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추가 증설도 빈번히 발생
 - 추가 증설 추진 시마다 건축허가 변경을 다시 신청해야 됨에 따라 건축물 증설 및 설비가동이 지연되는 문제 발생

 ■ S社: 반도체 시설은 신규 증설 또는 건설 과정에서 증설이 수시로 일어나는데, 증설 추진 시마다 건축허가 변경 절차를 다시 신청해야 해 증설이 지연

- (지원방안) 일정면적 이상 산단의 경우 증설 건축물에 대해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하여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「건축법」 개정 추진(26.下)



3 (반도체) 소부장 실증 지원법인 출연금 등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

- ▶ (사업내용) 반도체 5대 공정 실증설비(트리니티 팹) 구축
- ▶ (투자기간) '25~'31년
- ▶ (투자규모) 약 8,000억원

- (현황) 반도체 분야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, 반도체 기업 출연 등을 바탕으로 실증 지원법인(예: 트리니티 팹) 운영 중
 - 증여세 비과세 요건*을 충족하지 못해, 실증 지원법인이 출연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
 - *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상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
 -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국비지원(50%), 의사결정 주체(공공·민간 동률 구성), 상생협력 취지 등 감안 증여세 부담 경감 필요

【 트리니티 팍 개요 】

- (배경) 반도체 소부장 육성 및 소자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양산연계형 실증공간
- (내용) 12인치 웨이퍼 기반의 첨단반도체 前 공정용 실증공간
 - * [구축 시설] 3,300m² 규모의 Class 100 이하 클린룸
 - [공간 구성] 소부장 기업 입주공간 + 반도체 5대 공정별(노광, 식각, 산화 등) 실증공간
 - [구축 장비] 12인치 웨이퍼 기반, 공정 및 계측 장비
- (주요기능) ①반도체 소부장 양산 타당성 실증, ②Fab 연계 성능 검증, ③소부장 R&D 개발지원, ④반도체 전문인력 현장 교육시설

- (지원방안)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(건물이용, 인력 등)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('27~'31)

현 행	개 선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상 증여세 과세	◆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증여세 비과세 특례 신설(법 §19의2 신설) ■ (대상) 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정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① 국내 반도체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테스트베드 이용 허용* * 출연자와 협력 관계인 기업으로 제한하는 경우 등은 미해당 ② 이사회 이사 중 국가·지방 공무원, 국가·지방 자치단체가 추천한 자 및 공공기관 임·직원의 수가 50% 이상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「산업기술혁신법」에 따라 해당 법인과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 등 ■ (특례) 해당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■ (적용기한) '31.12.31까지

4 (바이오) 오창과학산단 내 바이오 제조시설 증설 위한 녹지 용도변경

- ▶ (사업내용) 국내 바이오기업 제조시설(공장) 증설
- ▶ (투자기간) '26~'33년
- ▶ (투자규모) 약 5,300억원

- (현황) G社は 오창과학산단 내 바이오 제조시설 증설 검토 중
 -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적으로 연결된 공장 증설이 필요하나, 산단 내 기존 유휴부지 부족 등으로 증설 곤란
 - 연접한 청주시 소유 녹지 용도 변경(녹지→산업용지) 및 구매 필요
- (지원방안) 기존 공장과의 연계 필요성, 산단 내 녹지 현황*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단계획 신속 변경(녹지→산업용지) 추진('26.下)
 - * 오창과학산단 녹지율은 18% 수준으로 용도변경 후에도 녹지율 기준(10~13%) 충족

5 (식품)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부지 활성화

- ▶ (사업내용) 음료제조업 부지를 식·음료제조업 부지로 변경(확장)하여 투자유치활성화 기여
- ▶ (사업기간) '26~'30년 ▶ (기업 투자규모) 약 3,500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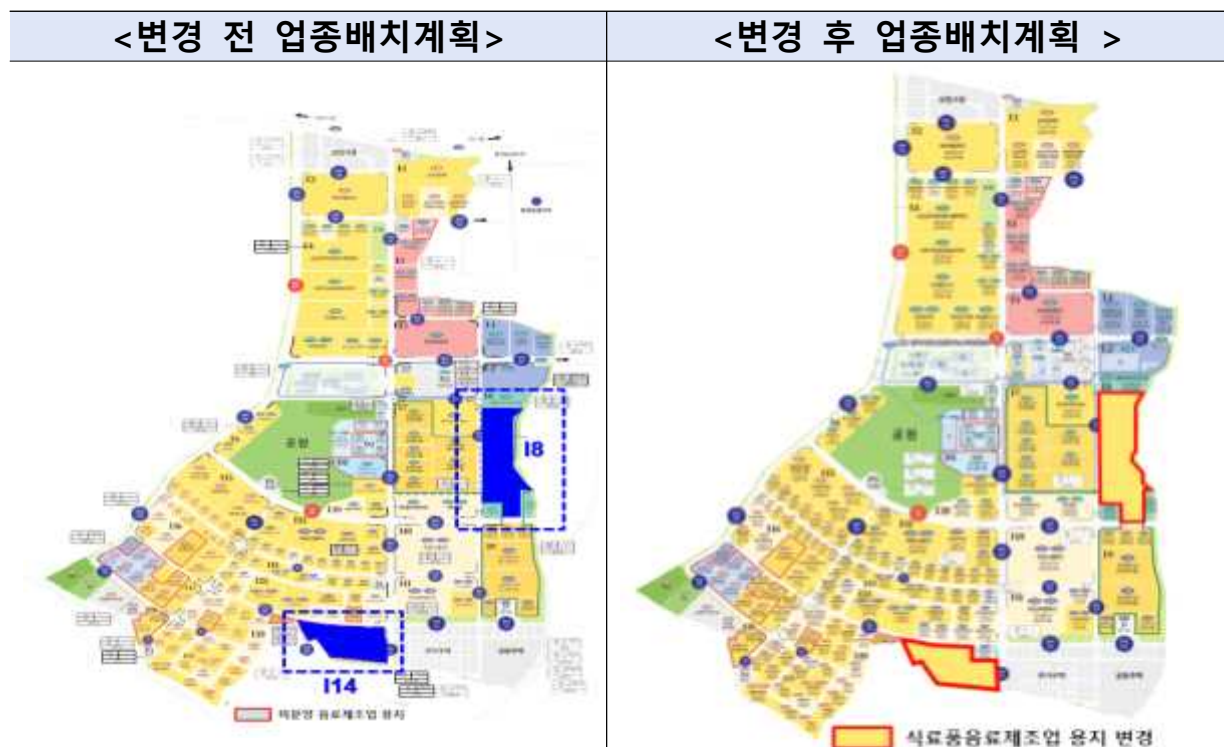
○ (현황) 국가식품클러스터(전북 익산) 내 음료제조업 부지의 분양률은 저조한 반면 식음료제조업 부지는 분양률 양호

* (분양률, '25.12월) (전체) 75.9%, (식음료제조업) 90.3%, (음료제조업) 22.2%

○ (추진방안) 관리기본계획을 조속히 변경하여 음료제조업 부지를 식음료제조업으로 입주 대상 업종 확대 추진('26.下)

유치업종	당 초			변 경	
	분양	미분양	전체 면적	전체 면적	증감
식료품·음료제조업 (C10, C11)	935,621㎡	100,189㎡	1,035,810㎡	1,126,253㎡	90,443㎡
음료제조업(C11)	25,754㎡	90,443㎡	116,197㎡	25,754㎡	△90,443㎡

* 잔여 부지(면적 4.7천~11.5천㎡)는 식료품 제조에 필요한 대규모 시설 투자가 어려우나, 현 음료부지(11.3~20.9천㎡)는 필지당 면적이 넓어 대규모 투자에 용이



2.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

1 첨단산업 규제 합리화

□ 협동로봇·신유형 로봇 확산을 위한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 구체화

- **(현황)** 근로자와 같이 작업하는 협동로봇은 울타리가 없는(펜스리스) 작업이 불가피하나, 펜스리스 작업 허용 기준이 불명확해 도입에 애로
 -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로봇은 고정형 매니퓰레이터 중심으로 정의되어, 이동형 등 신유형과 차이

- 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)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**높이 1.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... (중략) ... 다만,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한국산업표준에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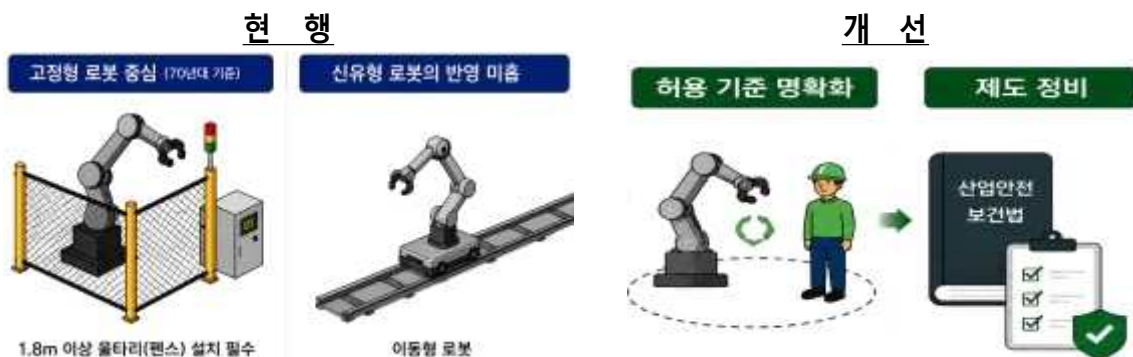
- **(지원방안)** 협동로봇 및 이동형 등 신유형 로봇이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 구체화

- ① 협동로봇 등 신유형 로봇이 KS·ISO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 마련*('27.上)

* 「산업용 로봇 안전기준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」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중('26.6월~)

- ② 다양한 유형의 로봇을 포괄하기 위해 산업용 로봇 정의를 정비*하고 이에 따른 실효적인 안전기준 방안 마련(~'27년)

* 제조·물류서비스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협동로봇, 이동형 로봇 등 다양한 유형의 로봇을 포괄해 산업용 로봇 정의 정비



□ 첨단전략산업 화재안전 성능기반설계 도입 및 직통계단 설치기준 정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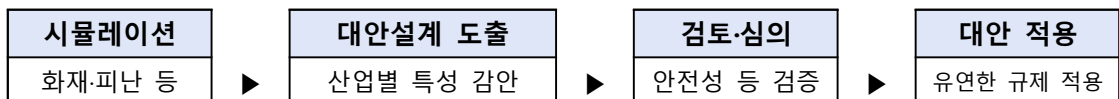
- **(현황)**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공장이 규모화되고 자동화됨에 따라 일반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기 불합리한 측면
 - 건물 화재안전을 위해 내화·피난·소화 등 복합적으로 규제 중이나, 경직적인 적용으로 첨단산업에서 규제 실효성·효율성 저하 우려
 - 화재안전을 위한 직통계단 설치의 경우 완화기준*을 적용하는 무인화 공장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기업의 혼란·애로 발생

* (자동화 공장) 피난거리 75m / (무인화 공장) 피난거리 100m(건축법 시행령)

- **(지원방안)** 6개 첨단전략산업* 대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합리적 대안설계 도출이 가능한 성능기반설계 도입 (「건축법」 및 하위 법령 개정 추진, ~'27년)

* ①반도체, ②이차전지, ③디스플레이, ④바이오, ⑤로봇, ⑥방산

- 시뮬레이션을 통해 “피난 소요시간 < 화재 확산시간” 검증해, 화재시 재실자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유연한 설계 및 규제 적용



※ '무인화 공장'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념 정의 및 인정기준 검토도 병행

□ 첨단 산업 특성을 고려한 도시가스 안전 규제 합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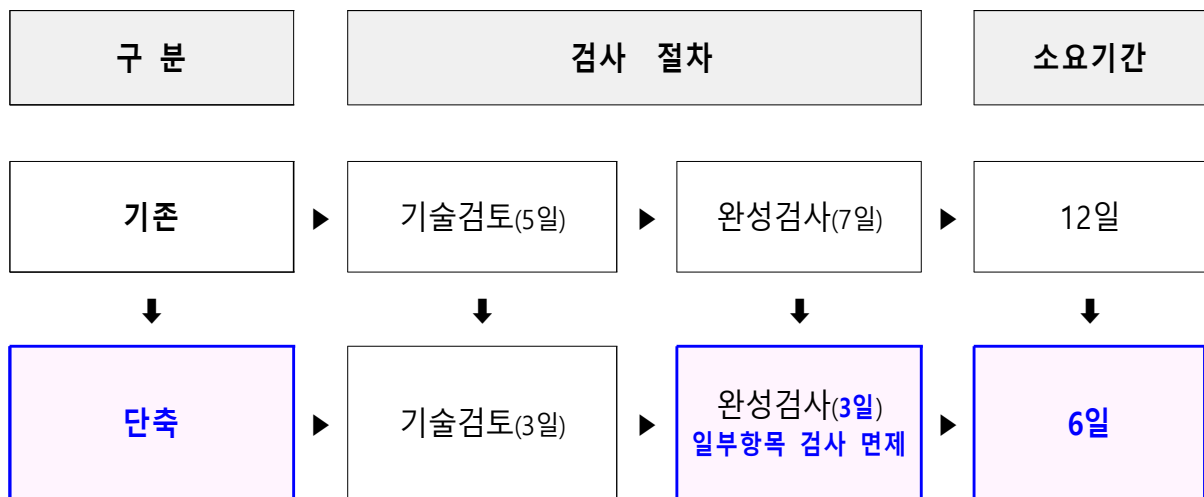
- **(현황)** 월간 도시가스 사용량 500m³ 이상 증가시 안전검사 (완성검사) 의무(반도체 유해가스 저장장치* 2대 증설시마다 검사 필요)
 - * 도시가스를 연료로 활용하여 공정 중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분해하는 저장장치
- 반도체 FAB 특성상 연간 약 1,800여건의 증설이 수시 발생하나, 완성검사 승인 대기로 첨단 설비 가동 지연

○ **(지원방안)** 반도체 FAB 등 첨단설비 가동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사기간 단축 및 일부 검사항목 면제(기존7일 → 개선3일)

▪ 안전장치·시공능력 갖춘 경우 일부 검사항목* 면제(KGS Code 개정^{'26.10월})

* 시공자의 자체시험성적서 제출로 완성검사 항목 중 내압·기밀시험 대체 인정

※ KGS Code(산업부공고) :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상세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



□ AI데이터센터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

○ **(현황)** AI데이터센터는 상주인력이 적음에도 건축법 등에 따른 주차장·승강기·미술품 설치의무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 중

○ **(지원방안)** 주차장·승강기·미술품 설치기준 면적 산정 시, AI데이터센터 전산실 면적 등은 제외*하여 설치부담 완화

* (現) [주차장] 시설면적 400m² 당 1대, [승강기] 거실면적 3,000m² 당 1대, [미술품] 연면적 10,000m² 이상

▪ 既 제정된 「AI데이터센터 특별법(‘26.6)」을 바탕으로, 주차장·승강기 등 설치의무 완화 특례에 관한 시행령 제정 추진(~'27.3월)

□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유연화

- **(현황)** 유치업종 지정 중심의 산업단지 업종계획에 따라 산업 시설 용지의 분양률 저조 및 기업 투자 유치에 애로 발생
 - 다수의 산업단지가 초기 업종계획을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하여, 입주기업의 업종 변경 및 신산업 기업의 입주 수요 미반영

현장의 목소리



- **!산단:** 염색업 영위 중소기업이 집적된 산업단지이나, 최근 극심한 경기 침체로 휴·폐업 증가, 기존 입주업종 규제하에서 안정적 운영·유지관리 어려움 발생

- **(지원방안)**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되는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 확대* 및 업종특례지구 요건 완화**('26.下)

* 예) (現) 산업용지 면적의 30% → (改) 신산업RE100 등에 필요한 경우, 50%까지 상향

** 예) (現) 토지소유자 2/3 동의 필요 → (改) 과반수 동의로 완화

【 제한업종 계획구역 및 업종특례지구 개요 】

[1] 제한업종 계획구역

- (개념) 조성단계에서 일부 면적을 지정하여 법령상 제한된 업종 외 모든 업종 입주 허용
- (법적근거) 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」 제13조 제1항 제2호 나목

[2] 업종특례지구 개요

- (개념) 산단 내 입주기업 등 동의를 받아, 산단 내 일부 면적(최대 50%)에 대하여 법령상 제한된 업종 외 모든 업종 입주 허용
- (법적근거) 「산업단지 관리지침」 제7조의 2

□ 중요도 높은 국가산단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 지정

- **(현황)** 현행 국토계획법 체계는 쏠 국토에 용도지역을 지정, 용도지역별로 조례에 따라 용도·밀도(용적률·건폐율)를 규정 중
 - 일부 국가산단은 용적률·건폐율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, 기업의 창의성·자율성 반영 및 혁신적인 공간 창출에는 미흡

- **(지원방안)** 기업형첨단도시 등 국가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단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*을 지정할 수 있도록 「산업입지법」 개정 추진('26.下)

* 토지의 이용,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 관련 제한을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춘 복합 개발을 허용하는 특례구역으로 시·도지사가 지정

- 용도제한이 없고 이론상 법상 용적률 상한(1,500%)도 초과할 수 있어 개발수요가 높은 부지의 고밀·복합개발에 활용 가능

□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 확대

- **(현황)** 「기회발전특구 지정·운영 지침」에 따라 광역시는 150만평, 도(道)는 20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

【 기회발전특구 개요 】

- **(개념)**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·재정 지원, 정주여건 개선, 인력 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
- **(법적근거)**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신청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지정
- **(혜택)**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·법인세 감면, 수도권에서 특구로 기업 이전 또는 공장 신·증설 및 창업시 취득·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및 지투보조금 지원비율 가산(5%p), 개발부담금 면제, 규제특례,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주택 특별공급 등

- 일부 시·도의 경우 신규투자 수요로 넓은 부지가 필요*하나, 최대치인 200만평을 모두 지정하여 추가 특구지정이 불가

* 함정MRO, 조선수리업, 해상풍력, 데이터센터, 대규모 물류단지 등



현장의 목소리

- **경상남도:** 고성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단지 48만평,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67만평 등 200만평 모두 지정하여 추가 특구지정 불가

- **(지원방안)** 신규투자 수요 등을 반영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특구 지정 상한면적 확대(「기회발전특구 지정·운영지침」 개정, '27.上)

* 예) 광역시 200만평, 도 300만평

IV. 향후 계획

1.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

추진 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▶ 구미·포항 국가산단 내 이차전지 연관기업 입주 지원		
•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개정	국토부	'26.下
•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	산업부	'26.下
▶ 대규모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시 별도 신규허가 허용		
• 「건축법」 개정 추진	국토부	'26.下
▶ 반도체 생태계 실증 지원		
•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 추진	재경부	'26.下
▶ 바이오 제조시설 증설		
• 용도변경 협의, 부지 매각	청주시	'26.下
▶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부지 활성화		
• 관리기본계획 변경	농식품부	'26.下

2. 투자친화적 제도기반 구축

추진 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▶ 협동로봇·신유형 로봇 등 피지컬 AI 확산		
•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 구체화	노동부	'27

추진 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▶ 첨단전략산업 화재안전 성능기반설계 도입 및 직통계단 설치기준 정비		
• 성능기반설계 도입	국토부	'27
▶ 첨단산업 도시기스 안전규제 합리화		
• KGS Code(산업부 공고) 개정	산업부	'26.10
▶ AIDC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		
• 「AIDC 특별법」 시행령 제정	과기부	'27.3월
▶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유연화		
• 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」 개정	국토부	'26.下
• 「산업단지 관리지침」 개정	산업부	'26.下
▶ 도시혁신구역 도입		
• 「산업입지법」 개정 추진	국토부	'26.下
▶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 확대		
• 「기회발전특구 지정·운영 지침」 개정	산업부	'27.上